

#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
제정 2006.11.29	개정 2013.11.29	개정 2018. 2. 7
개정 2008. 6. 3	개정 2014.10.31	개정 2020. 2.13
개정 2011. 2. 8	개정 2016.11.30	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포항공과대학교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.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세칙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평의원회는 정관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. (개정: 2008.6.3)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7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 제 2 장 조 직

제4조(구성)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 5명
2. 직원 2명

3. 학생 2명

4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

제5조(위촉)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2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3.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4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교외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교원 대표 평의원의 선출) ① 교원 대표 평의원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포항공과대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 (개정: 2013.11.29)

② 평의원으로 봉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교원을 제외하고는 입후보 등록 없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. (개정: 2016.11.30)

③ (삭제: 2016.11.30)

④ 제4조 1호의 정원 수 이하로 기표되어야 한다.

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순서로 제4조 1호의 정원 수까지 당선자로 한다.

⑥ 동일한 득표수의 경우에는 부임 일시가 빠른 순으로 한다.

⑦ 투표방법의 결정 및 선거의 관리는 교수평의회가 주관한다. (개정: 2016.11.30)

제7조(직원 대표 평의원의 선출) ① 직원 대표 평의원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포항공과대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으로 한다.

② 선거권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직장발전협의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.

③ 제4조 2호의 정원 수 이하로 기표되어야 한다.

④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순서로 제4조 2호의 정원수까지 당선자로 한다.

⑤ 동일한 득표수의 경우에는 임용일시가 빠른 순으로 한다.

⑥ 투표방법의 결정 및 선거의 관리는 직장발전협의회가 주관한다.

제8조(학생 대표 평의원의 선출) ① 학생 대표 평의원 중 1명은 학부생의 대표인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총학생회장 부재 혹은 휴학일 경우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. (개정: 2020.2.13)

② 학생 대표 평의원 중 1명은 대학원생의 대표인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대학원 총학생회장 부재시에는 대학원생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선출

한다.(개정: 2014.10.31)

③ (삭제: 2014.10.31)

④ (삭제: 2014.10.31)

제9조(교외 평의원의 위촉)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(임기 및 추천시기) ① 평의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1. 교원 2년
2. 직원 2년
3. 학생 1년
4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외 인사 2년

② 총장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, 각 구성단위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후임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평의원의 사임 및 해촉) ① 평의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8.2.7)

② 평의원은 사임서를 제출한 날에 해촉된다. (개정: 2018.2.7)

제12조(평의원의 자격상실) ① 교원 대표 평의원과 직원 대표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직 및 퇴직
2.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
3. 3개월 이상의 국외 연수 또는 국외 연구년

② 학생 대표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학 및 졸업
2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
3. 3개월 이상의 국외 교환학생 파견

제13조(면책)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.

### 제 3 장 임 원 및 기 구

제14조(의장) ① 평의원회는 의장 1인을 둔다.

②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의장은 평의원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평의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. 단,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의장의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.

⑤ 의장 유고 시 그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 의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부의장) ① 평의원회에는 부의장 1인을 둔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 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부의장의 선출은 의장의 선출방식에 따른다.

④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.

제16조(간사) ① 평의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.

제17조(분과 위원회) 평의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평의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8조(개방이사추천위원회)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하여 의장에게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‘추천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을 요청하면 의장은 10일 이내에 그 설치를 완료하고 그 구성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신설: 2008.6.3)

### 제 4 장 회 의

제19조(회의)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.

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3. 평의원 1/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제20조(소집)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일 5일전까지는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평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여야 한다.

제21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 단, 출석평의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.

제22조(회의록)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출석평의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제23조(회의록 공개) ① 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회의록을 7일 이내에 교내신문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4조(출석 및 자료제출) 의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5조(예산)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개방이사 및 감사

제26조(추천위원회 구성) 의장은 평의원회에 동의를 얻어 법인에서 추천하는 2인의 추천위원에 더하여 3인의 추천위원을 대학평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구성한다. (개정 : 2008.6.3)

제27조(추천위원회 운영) 추천위원회의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이 세칙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필요시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 (개정: 2008.6.3)

## 제 6 장 보 칙

제28조(개정) 이 세칙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29조(내규) 평의원회는 이 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최초의 평의원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최초 학생 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세칙은 2008년 6월 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1년 2월 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8년 2월 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0년 2월 1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